

판 결

사 건

총포·도검·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, 사기

피 고 인

검 사

변 호 인

변호사 조효동(국선)

판 결 선 고

주 문

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, 제4죄, 제5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, 판시 제1의 나죄, 제2의 가, 나죄,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압수된 판시 사건의 4INCH REVOLVER(권총) 모의총포 1개(증 제1호), COLT M1911(권총) 모의총포 1개(증 제2호), VSR-10(소총) 모의총포 1개(증 제3호),

BUSHNELL(부쉬넬) 조준경 1개(증 제6호)를 각 몰수한다.